

2023년 하반기 부산시설공단 청년 체험형 인턴 공개경쟁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2023년 하반기 부산시설공단 청년 체험형 인턴 공개경쟁 채용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1. 최종 합격자(접수번호 순)

가. 2023-청년 체험형 인턴_행정-접수번호

2023-청년 체험형 인턴_행정-02

2023-청년 체험형 인턴_행정-09

2023-청년 체험형 인턴_행정-24

나. 2023-청년 체험형 인턴_전기-접수번호

2023-청년 체험형 인턴_전기-03

2023-청년 체험형 인턴_전기-13

2. 예비합격자

가. 2023-청년 체험형 인턴_행정-접수번호

[예비1] 2023-청년 체험형 인턴_행정-17

[예비2] 2023-청년 체험형 인턴_행정-29

[예비3] 2023-청년 체험형 인턴_행정-18

나. 2023-청년 체험형 인턴_전기-접수번호

[예비1] 2023-청년 체험형 인턴_전기-12

[예비2] 2023-청년 체험형 인턴_전기-14

[예비3] 2023-청년 체험형 인턴_전기-16

3. 최종 합격자 등록

가. 등록기간: 2023. 11. 22.(수) ~ 11. 24.(금) 18:00까지

※ 등록기간 내 합격자 미등록 시 최종합격이 취소됩니다.

나. 등록장소: 부산시설공단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 174(연지동)

다. 제출서류 ▷ 최종합격자 발표공고일 이후 발행분(주민등록번호 전부 노출)

- ①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통(재학증명서 포함)
 - ②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변동이력 포함)
 - ③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 ④ 주민등록등본 2통
 - ⑤ 사진(3×4, 상반신 탈모) 5매
 - ⑥ 국민연금 가입자용 가입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가입이력 확인서 중 하나
- ※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신청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고용보험 홈페이지 참조)
- ⑦ 친인척 재직여부 확인서 1통 [붙임파일참조]
- ※ 예시내용을 지운 후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 사항 없음'을 기재하여 제출
- ※ 재직 중인 친인척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전에 확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⑧ 부산시설공단 신규임용자 서약서 1통 [붙임파일참조]
 - 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1통 [붙임파일참조]
 - ⑩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붙임파일참조]
 - ⑪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 ⑫ 장애인증명서 또는 북한이탈주민확인서 1통(해당자에 한함)
 - ⑬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중 1통(다문화가족 해당자에 한함)

4. 합격자 준수사항

가. 최종합격자 등록 시 합격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야 합니다.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을 시 인재경영팀(051-860-7661)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나. 합격자는 임용후보자 등록을 거쳐 2023. 11. 27.(월) 임용됩니다.

다. 합격자는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임용될 수 없습니다.

라. 채용분야별 응시자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미충족 시 임용될 수 없습니다.

마. 채용관련 인사 청탁 등 채용비리 또는 기타의 부정합격 확인 시 채용이 취소되며, 향후 5년간 부산시설공단 채용 지원 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문의 사항은 인재경영팀(☎051-860-7661)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5. 예비합격자 안내사항

가. 예비합격 유효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인턴 근무기간 종료일까지

※ 유효기간 내 임용되지 않을 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나. 예비합격자의 임용사유

- 임용포기, 자진 퇴사 등에 따른 대응방안 확보 및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

다. 예비합격자 임용 발표방법: 유선통보(입사지원서에 등록된 연락처)

※ 예비합격 대상자의 등록된 휴대전화 연락처로 3회 연락에도 연락불가 시 임용포기로 간주

※ 예비합격자 임용 발표 시 [051-860-7661](tel:051-860-7661)로 연락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유의사항

- 예비합격자의 지위는 유효기간 내에만 유효합니다.
- 예비합격 유효기간 내 연락이 가지 않을 시 임용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므로 불합격 처리됩니다.
- 연락 불가에 따른 책임은 예비합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6. 공단 임용 결격사유

■ 부산시설공단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아동·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가 확정된 사람
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 기피의 사실이 있는 사람
9. 채용 관련 비위행위로 합격한 사람
10. 채용 관련 비위행위로 면직된 자 중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